2026. 11. 1.
제 1747 호



법원 공보

법원행정처

법원공보

2026년 11월 1일(일요일)

제1747호

CONTENTS

규칙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1473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1475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477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49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492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494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1496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1498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500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 1502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1509

예규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511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517

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519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520

신법령 목록 1522

규칙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78호 2026. 10. 12. 공포)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제1항 중 “법원·검찰청”을 “법원·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3조(기록 가운데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 ① 법원·검찰청, 그 밖의 공공기관(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이 모두를 "법원등"이라 한다)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의 불특정한 일부에 대하여도 법 제352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송부의 촉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113조(기록 가운데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 ① 법원·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 ② · ③ (현행과 같음)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79호 2026. 10. 12. 공포)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6조 본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형사판결등 결과통지) 형사판결 또는 감호판결이 있을 때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재판장의 확인을 받아 판결 결과를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형사판결등 결과통지) ---------- ---------- ----------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제26조(형사소송기록 등 송부) 형사사건 또는 치료감호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사건기록과 재판서를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또는 수사처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기록의 일부가 전자적 형태로 보관된 경우 이를 전송하거나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복제하여 송부한다.	제26조(형사소송기록 등 송부) ---------- ---------- ---------- -- 공소청 ----------. ---------- ---------- ----------.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80호 2026. 10. 12. 공포)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제2장제7절에 제2관의2(제175조의2부터 제175조의1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관의2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75조의2(가상자산이전청구권 집행의 개시)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다음부터 "가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이전청구권(다음부터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한다.

제175조의3(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압류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다음부터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를 포함한다]에게 채무자에 대한 가상자산의 이전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처분과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175조의4(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인정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내용
2. 압류명령에 목적으로 표시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상응하는 가상자산의 보유 여부 및 보유하고 있다면 그 종류와 수량
3. 위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에 우선하여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사람의 표시 및 그 권리의 종류와 우선하는 범위
4. 위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이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명령에 관한 사건의 표시, 채권자의 표시, 송달일 및 그 집행의 범위

제175조의5(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현금화) ① 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된 제3채무자에 대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다음부터 "가상자산이전청구권양도명령"이라 한다) 또는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명령(다음부터 "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이라 한다)을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제175조의6(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 ① 법원이 집행관에 대하여 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가상자산사업자인 제3채무자에게 매각을 위탁하는 방법
2. 압류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가상자산사업자인 제3채무자에 개설된 집행관의 계정(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거래·보관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에게 부여한 고유식별부호를 말한다. 다음부터 "계정"이라 한다)으로 이전하여 매각하는 방법
3. 제3채무자에 대하여 압류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목적인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고, 집행관이 제3채무자 이외의 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매각하는 방법(압류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목적인 가상자산을 제3채무자가 아닌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된 집행관의 계정으로 이전할 것을 명한 후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이전청구권을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현금화가 용이한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으로 교환한 후 매각하는 등 상당한 절차를 거쳐 매각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매각명령을 받은 집행관은 제3채무자에 그 명의의 계정을 개설하고, 압류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집행관의 계정으로 이전할 것을 제3채무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청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매각명령에 기하여 집행관에게 이전된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④ 집행관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매각명령에 기하여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이전받은 때에는 즉시 그 취지, 이전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이나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이전받은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다음부터 "가상자산주소"라 한다), 집행관의 계정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집행관이 제3채무자에게 제1항제1호에 따른 매각위탁, 제3호의 명령에 기초한 이전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등본과 그 확정증명을, 제2항에 따른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등본과 그 확정증명, 집행관의 계정이 개설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각각 붙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집행관의 계정으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이 이전된 후 그 매각을 완료하기 전에 집행관이 변경되는 경우, 후임 집행관은 제2항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제3채무자는 후임 집행관의 청구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제1호에 따른 매각위탁을 받은 제3채무자는 위탁의 취지에 따라 그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에서 조세, 그 밖의 공과금과 위탁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⑧ 제1항제4호의 경우 제2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75조의7(가상자산 집행의 개시) 채무자가 보유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상자산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한다.

제175조의8(가상자산에 대한 압류명령) ① 법원은 채무자가 보유하는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상자산의 처분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그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명령에 기초한 이전집행은 압류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④ 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집행관이 가상자산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그 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⑤ 집행관이 가상자산을 이전받은 때에는 즉시 그 취지, 이전받은 가상자산의 종류, 수량, 이전받은 가상자산 주소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5조의9(가상자산의 현금화) ① 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된 가상자산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다음부터 “가상자산양도명령”이라 한다) 또는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명령(다음부터 “가상자산매각명령”이라 한다)을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집행관이 가상자산을 이전받았다는 취지를 법원에 신고한 이후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제175조의10(가상자산양도명령) ① 가상자산양도명령의 신청서에는 압류채권자의 가상자산주소 등을 적어야 한다.

② 가상자산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집행관에 대하여 양도명령의 대상인 가상자산을 제1항의 가상자산주소 등으로 이전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전요청을 받은 집행관은 그 취지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제175조의13에서 준용하는 법 제229조제5항에 따라 가상자산양도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5조의11(가상자산매각명령) 법원은 집행관에 대하여 가상자산매각명령을 하는 경우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175조의12(가상자산 관련 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 ① 가상자산 관련 강제집행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집행관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집행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집행관의 요청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채무자의 계정 등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제175조의6제1항제3호 또는 제175조의8제2항의 이전명령에 따라 가상자산이 집행관 또는 제3채무자가 아닌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전한 제3채무자 또는 채무자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한 후, 그 취지, 이전한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이전방법 등을 법원에 신고
2. 제175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이 집행관의 계정으로 이전된 경우: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채무자의 계정 등으로 이전한 후, 그 취지, 이전한 가상자산이전청구권 등의 종류 및 수량, 이전방법 등을 법원에 신고
3. 제175조의6제1항제4호에 따라 현금화가 용이한 가상자산으로 교환한 후 그 매각을 완료하기 전인 경우: 집행관에게 현존하는 가상자산 또는 그 이전청구권을 제3채무자에게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이전하고 그 취지, 종류, 수량, 이전방법 등을 법원에 신고

③ 집행관이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집행관의 신청을 받아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집행절차에 따라 매각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와 담보권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 기초하여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이 매각되어 그 대금이 법원에 납부된 때에는 법원은 그 대금에서 매각과 보관에 든 비용을 빼고,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매각대금의 교부계산서를 작성하여 담보권자에게 변제금을 교부하고, 그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변제금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81조, 제82조, 법 제146조, 법 제160조 및 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5조의13(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①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48조, 제126조제1항,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제1항,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24조, 법 제225조,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 내지 제4항, 법 제235조, 법 제237조제2항·제3항, 법 제239조, 법 제241조제2항 및 법 제247조(제1항제1호·제2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을, 법원이 실시하는 배당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2편제2장제4절제4관(법 제252조제1호·제2호는 제외한다), 법 제149조 및 법 제150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가상자산이전청구권양도명령, 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 가상자산양도명령, 가상자산매각명령에 관하여는 제163조의 규정을, 각 양도명령에 관하여는 제164조, 법 제229조제5항 및 법 제231조의 규정을, 각 양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법 제229조제8항의 규정을, 각 매각명령에 관하여는 제59조, 제165조제1항·제2항·제4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3조제1항에 "법 제241조제1항"이라고 규정된 것은 "제175조의5제1항, 제175조의9제1항"으로 본다.

제1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3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이나 권리행사"를 "법 제273조에 따른 담보권 실행이나 권리행사, 제200조의2에 규정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273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신청"을 "법 제273조에 따른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신청, 제200조의2에 규정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 신청,"으로 한다.

제20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0조의2(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관하여는 제2편제2장제7절제2관의2(제175조의13에서 준용하는 제159조와 법 제188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200조제1항, 법 제264조제2항·제3항, 법 제265조, 법 제266조, 법 제267조, 법 제273조제1항 및 법 제275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2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3조의2(가상자산 등에 대한 가압류) 가상자산과 그에 관한 이전청구권 등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74조, 제175조의3, 제175조의4, 제175조의8, 제175조의12,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35조, 법 제282조 및 법 제296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96조제2항에 "채권가압류"라고 규정된 것은 "「민사집행규칙」 제213조의2의 가압류"로 본다.

제2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6조의2(가상자산 등에 대한 가처분) 가상자산 등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에는 제21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 전에 가상자산이전청구권, 가상자산에 대한 각 압류명령, 현금화명령, 보전처분(다음부터 "압류명령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압류명령 등은 이 규칙에 따른 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관의2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 설〉	제175조의2(가상자산이전청구권 집행의 개시)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다음부터 "가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이전청구권(다음부터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한다.
〈신 설〉	제175조의3(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압류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다음부터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를 포함한다]에게 채무자에 대한 가상자산의 이전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처분과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5조의4(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인정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내용 2. 압류명령에 목적으로 표시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상응하는 가상자산의 보유 여부 및 보유하고 있다면 그 종류와 수량 3. 위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에 우선하여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사람의 표시 및 그 권리의 종류와 우선하는 범위 4. 위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이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명령에 관한

현 행	개 정 안
	사건의 표시, 채권자의 표시, 송달일 및 그 집행의 범위
〈신 설〉	제175조의5(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현금화) ① 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된 제3채무자에 대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다음부터 "가상자산이전청구권양도명령"이라 한다) 또는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명령(다음부터 "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이라 한다)을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신 설〉	제175조의6(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 ① 법원이 집행관에 대하여 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가상자산사업자인 제3채무자에게 매각을 위탁하는 방법 2. 압류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가상자산사업자인 제3채무자에 개설된 집행관의 계정(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거래·보관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에게 부여한 고유식별부호를 말한다. 다음부터 "계정"이라 한다)으로 이전하여 매각하는 방법 3. 제3채무자에 대하여 압류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목적인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고, 집행관이 제3채무자 이외의 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매각하는 방법(압류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목적인 가상자산을 제3채무자가 아닌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된 집행관의 계정으로 이전할 것을 명한 후 해당

현 행	개 정 안
	가상자산에 대한 이전청구권을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현금화가 용이한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으로 교환한 후 매각하는 등 상당한 절차를 거쳐 매각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매각명령을 받은 집행관은 제3채무자에 그 명의의 계정을 개설하고, 압류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집행관의 계정으로 이전할 것을 제3채무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청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매각명령에 기하여 집행관에게 이전된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④ 집행관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매각명령에 기하여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이전받은 때에는 즉시 그 취지, 이전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이나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이전받은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다음부터 “가상자산주소”라 한다), 집행관의 계정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집행관이 제3채무자에게 제1항제1호에 따른 매각위탁, 제3호의 명령에 기초한 이전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등본과 그 확정증명을, 제2항에 따른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등본과 그 확정증명, 집행관의 계정이 개설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각각 붙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집행관의 계정으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이 이전된 후 그 매각을 완료하기 전에 집행관이 변경되는 경우, 후임 집행관은 제2항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제3채무자는 후임 집행관의 청구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제1호에 따른 매각위탁을 받은 제3채무

현 행	개 정 안
	자는 위탁의 취지에 따라 그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에서 조세, 그 밖의 공과금과 위탁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⑧ 제1항제4호의 경우 제2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175조의7(가상자산 집행의 개시) 채무자가 보유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상자산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한다.
〈신 설〉	제175조의8(가상자산에 대한 압류명령) ① 법원은 채무자가 보유하는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상자산의 처분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그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명령에 기초한 이전집행은 압류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④ 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집행관이 가상자산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그 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⑤ 집행관이 가상자산을 이전받은 때에는 즉시 그 취지, 이전받은 가상자산의 종류, 수량, 이전받은 가상자산주소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5조의9(가상자산의 현금화) ① 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된 가상자산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다음부터 “가상자산양도명령”이라 한다) 또는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명령(다음부터 “가상자산매각명령”이라 한다)을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집행관이 가상자산을 이전받았다는 취지를 법원에 신고한 이후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

현 행	개 정 안
	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신 설〉	제175조의10(가상자산양도명령) ① 가상자산양도명령의 신청서에는 압류채권자의 가상자산주소 등을 적어야 한다. ② 가상자산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집행관에 대하여 양도명령의 대상인 가상자산을 제1항의 가상자산주소 등으로 이전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전요청을 받은 집행관은 그 취지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제175조의13에서 준용하는 법 제229조제5항에 따라 가상자산양도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175조의11(가상자산매각명령) 법원은 집행관에 대하여 가상자산매각명령을 하는 경우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5조의12(가상자산 관련 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 ① 가상자산 관련 강제집행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집행관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집행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집행관의 요청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채무자의 계정 등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제175조의6제1항제3호 또는 제175조의8제2항의 이전명령에 따라 가상자산이 집행관 또는 제3채무자가 아닌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전한 제3채무자 또는 채무자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한 후, 그 취지, 이전한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이전방

현 행	개 정 안
	법 등을 법원에 신고 2. 제175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이 집행관의 계정으로 이전된 경우: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채무자의 계정 등으로 이전한 후, 그 취지, 이전한 가상자산이전청구권 등의 종류 및 수량, 이전방법 등을 법원에 신고 3. 제175조의6제1항제4호에 따라 현금화가 용이한 가상자산으로 교환한 후 그 매각을 완료하기 전인 경우: 집행관에게 현존하는 가상자산 또는 그 이전청구권을 제3채무자에게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이전하고, 그 취지, 종류, 수량, 이전방법 등을 법원에 신고 ③ 집행관이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집행관의 신청을 받아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집행절차에 따라 매각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채무자와 담보권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 기초하여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이 매각되어 그 대금이 법원에 납부된 때에는 법원은 그 대금에서 매각과 보관에 든 비용을 빼고,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매각대금의 교부계산서를 작성하여 담보권자에게 변제금을 교부하고, 그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변제금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81조, 제82조, 법 제146조, 법 제160조 및 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175조의13(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①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48조, 제126조제1항,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제1항,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24조, 법 제225조,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 내지 제4항, 법 제235조, 법 제237조제2항·제3항, 법

현 행	개 정 안
	제239조, 법 제241조제2항 및 법 제247조(제1항제1호·제2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을, 법원이 실시하는 배당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2편제2장제4절제4관(법 제252조제1호·제2호는 제외한다), 법 제149조 및 법 제150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가상자산이전청구권양도명령, 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 가상자산양도명령, 가상자산매각명령에 관하여는 제163조의 규정을, 각 양도명령에 관하여는 제164조, 법 제229조제5항 및 법 제231조의 규정을, 각 양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법 제229조제8항의 규정을, 각 매각명령에 관하여는 제59조, 제165조제1항·제2항·제4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3조제1항에 "법 제241조제1항"이라고 규정된 것은 "제175조의5제1항, 제175조의9제1항"으로 본다.
제192조(신청서의 기재사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법 제273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이나 권리행사 제201조에 규정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 또는 제201조의2에 규정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 실행(다음부터 "경매등"이라 한다)을 위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자·채무자·소유자(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매의 신청, 법 제273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신청 제201조에 규정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 신청 및 제201조의2에 규정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 실행 신청의 경우에는 그 목적인 권리의 권리자를 말한다. 다음부터 이 편 안에서 같다)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 4. (생 략) 〈신 설〉	제192조(신청서의 기재사항) ----------, 법 제273조에 따른 담보권 실행이나 권리행사, 제200조의2에 규정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각 호----------. 1. ----------, 법 제273조에 따른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신청, 제200조의2에 규정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 신청, ----------. 2. ~ 4. (현행과 같음) 제200조의2(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담보권의

현 행	개 정 안
	실행)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절차에 관하여는 제2편제2장제7절제2관의2(제175조의13에서 준용하는 제159조와 법 제188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200조제1항, 법 제264조제2항·제3항, 법 제265조, 법 제266조, 법 제267조, 법 제273조제1항 및 법 제275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신 설〉	제213조의2(가상자산 등에 대한 가압류) 가상자산과 그에 관한 이전청구권 등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74조, 제175조의3, 제175조의4, 제175조의8, 제175조의12,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35조, 법 제282조 및 법 제296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96조제2항에 "채권가압류"라고 규정된 것은 "「민사집행규칙」 제213조의2의 가압류"로 본다.
〈신 설〉	제216조의2(가상자산 등에 대한 가처분) 가상자산 등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에는 제21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81호 2026. 10. 12. 공포)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하 “금전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되어 그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이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이하 “검사”라고 한다)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이하 “수사처검사”라고 한다)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 ---------- ---------- ---------- ---------- -----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82호 2026. 10. 12. 공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회부절차) ① (생 략) ② 제1항의 송부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이하 “수사처검사”라고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본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을 지방법원 본원 소재지의 교도소나 구치소로 이감한다.	제7조(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회부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방공소청 ----------. ③ ---------- 지방공소청 ----------.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83호 2026. 10. 12. 공포)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하 “금전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되어 그 채무자가 법 제40조제4항에 의하여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이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이하 “검사”라고 한다)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이하 “수사처검사”라고 한다)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 ---------- ---------- ---------- ----------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 ----------.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84호 2026. 10. 12. 공포)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서울고등검찰청검사”를 “서울광역공소청검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① (생 략) ② 이 규칙에서 “법원”이라 함은 서울고등법원을, “판사”라 함은 서울고등법원판사를, “검사”라 함은 서울고등검찰청검사를 말한다.	제2조 (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서울광역공소청검사---------.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85호 2026. 10. 12. 공포)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수사하는 검찰청”을 “담당하는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경찰서등”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찰청, 수사처나 경찰서등”을 “공소청, 수사처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사건기록등) ① · ② (생 략)	제25조(사건기록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속영장 또는 감호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어 있는 위반자에 대하여 감치의 재판을 한 때에는 그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와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각 통보서의 등본을 그 구속이 행하여진 사건이 계속중인 법원 또는 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나 경찰서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 담당하는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경찰서 등 수사기관-------.
④ 제3항의 서류를 송부받은 법원 또는 검찰청, 수사처나 경찰서등은 이를 그 사건기록의 구속관계서류에 연속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④ ---------- 공소청, 수사처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86호 2026. 10. 12. 공포)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하 “금전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되어 그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이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이하 “검사”라고 한다)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이하 “수사처검사”라고 한다)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 ---------- ---------- ---------- ---------- -----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 --------.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87호 2026. 10. 12. 공포)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항 본문 중 “검사는”을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등(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를 “청구기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전단 중 “검찰청 또는 수사처”를 “청구기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검찰청 또는 수사처”를 “청구기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전단 중 “검찰청 또는 수사처”를 “청구기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전단 중 “검찰청 또는 수사처”를 “청구기관”으로 한다.

제7조의4제1항 전단 중 “검찰청 또는 수사처”를 “청구기관”으로 한다.

제7조의5제1항 중 “검사”를 “수사처검사등”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법 제13조제3항”을 각각 “법 제1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검찰청 또는 수사처”를 “청구기관”으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 중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4항”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수사처검사등,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로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전단 중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기간동안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 유지에 필요한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제4조(특별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한 경우,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파견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3(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① (생 략)	제3조의3(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사는 심리를 위하여 승인청구서 제출 시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 외에 해당 전기통신의 내용을 열람(청취·시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한 자료(이하 "통신내용자료"라고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고,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전기통신의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의 내용을 분석·설명한 자료(이하 "통신내용분석자료"라고 한다)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전기통신 및 통신내용자료는 일정 용량의 파일 단위로 분할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등(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
제6조(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봉투에 넣어 봉인하거나 기타 보안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이하 "보안유지조치"라고 한다)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 청구기관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승인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승인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승인서와 소명자료,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통신내용분석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검찰청 또는 수사처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승인서와 소명자료,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에 대하여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의2(승인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 청구기관 ----------.

현 행	개 정 안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청구서와 소명자료를 검찰청 또는 수사처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허가청구서와 소명자료에 대하여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인계 전에 기각의 취지가 기재된 허가청구서를 사본하여 허가서 용지와 함께 편철하여 둔다.	제7조(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 청구기관 ----------. ----------. ----------.

현 행	개 정 안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4(승인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승인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승인서와 소명자료,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를 검찰청 또는 수사처 담당 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승인서와 소명자료,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에 대하여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인계 전에 일부 기각의 취지가 기재된 승인서를 사본하여 승인청구서, 전기통신 및 그 목록 부본, 통신내용자료 부본과 함께 편철하여 둔다.	제7조의4(승인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 ---------- 청구기관 ---------- ----------. ---------- ----------.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5(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 편철)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라 폐기의 이유와 범위 및 일시, 전기통신의 취득부터 폐기까지의 진행 경과 및 요지, 그 주체 및 방법 등을 기재한 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5(전기통신폐기결과보고서 편철) ① 수사처검사등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의 방식) ①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서에는 법 제13조제3항의 기재사항 외에 해당 가입자의 인적사항,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전기통신사업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의3(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의 방식) ① ---------- 법 제13조제4항---------- ----------.
② 법 제13조제3항의 '필요한 자료의 범위'에는 법 제2조제11호에 규정된 통신사실 확인자료 중 필요로 하는 자료의 종류, 필요로 하는 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4항---------- ----------.
③ 법 제13조제3항 단서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서에는 제1항, 제2항의 기재사항 외에 미리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긴급한 사유,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을 한	③ 법 제13조제4항 ----------

현 행	개 정 안
일시, 긴급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자의 관직·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④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서에는 부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부본이 있을 경우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서 또는 허가청구서를 검찰청 또는 수사처 담당직원에게 인계할 때 함께 반환한다.	④ ----------. ---------- 청구기관 ----------.
제10조의4(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실의 통보)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3조제3항 단서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자료를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 또는 법원행정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4(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실의 통보) ① ---------- 법 제13조제4항 수사처검사등,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상황카드 및 허가서에 관하여 비밀의 분류등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 다음,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같은 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의 봉투에 넣고 봉인하여 고등검찰청 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허가서가 Ⅱ급비밀로 분류된 때에는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의 영수증을 받는다.	제15조(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 광역공소청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제15조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가청구서와 소명자료를 고등검찰청 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다만, 봉인 전에 기각의 취지가 기재된 허가청구서를 사본하여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 다음 허가서 용지와 함께 편철하여 둔다.	제16조(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 광역공소청 ----------. ----------.

현 행	개 정 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상황카드 및 허가서에 관하여 비밀의 분류 등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 다음,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같은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봉투에 넣고 봉인하여 고등검찰청 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허가서가 II급 비밀로 분류된 때에는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영수증을 받는다. 다만, 봉인 전에 일부 기각의 취지가 표시된 허가서를 사본하여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 다음 허가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둔다.	제16조의2(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 ---------- ---------- ---------- ---------- ---------- 광역공소청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88호 2026. 10. 12. 공포)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당직”을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근무구역”을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표찰을 패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중 “설치, 운영”을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장, 임시조치 등의 업무를 하지 않는 기관으로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의2 중 “당직실”을 “당직실(당직실을 설치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숙직근무자”를 “당직근무자”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 ③ (생 략)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의한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 ② ----------.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표찰을 패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당직실의 위치) 각급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8조(당직실의 위치) ----------설치·운영----------. 다만, 영장, 임시조치 등의 업무를 하지 않는 기관으로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의2(당직실 전화설치 등)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의2(당직실 전화설치 등) 당직실(당직실을 설치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장소)----------.
제10조의2(재택당직근무)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실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한 후에 숙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제10조의2(재택당직근무) ① ---------- 당직근무자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예규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476호 2026. 10. 21. 결재)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2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 글 또는 동작 등으로 공공연하게 표현(이하 "혐오표현"이라 한다)하는 경우

별표 1과 별표 1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예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별표 1]

징계양정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 - 각종 규정 미준수 - 지연처리 - 확인소홀 - 관리·감독 책임소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불이익처분
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하목에 따른 비위는 제외한다)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다. 공문서 위·변조, 파기·망실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라. 허위문서·조사표 작성, 허위보고, 허위전산입력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비밀·대외비 문서관리 소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바. 문서, 기록, 관인관리 소홀	강등~정직	감봉	견책	불이익처분
사. 시험부정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아. 근무평정 관련 부정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자. 감사업무방해 행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불이익처분
차. 예산·회계 관련 비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카. 물품 및 시설관리 태만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불이익처분
타. 감정인 선정관련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불이익처분
파.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별표 1의2와 같음			
거. 실적 대리입력 등의 방법으로 하목의 비위행위에 조력한 경우				
너.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더.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신고	감봉	견책	불이익처분	
머.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불이익처분
3.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	* 월 3일(회) : 최초 무단결근 등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의 일(회)수를 산정			
가. 무단결근	해임~견책 (월 3일 초과)			불이익처분 (월 3일 이하)
나. 지각·무단이석	강등~견책 (월 3회 초과)			불이익처분 (월 3회 이하)
다. 당직근무 불이행	강등~정직	감봉	견책	불이익처분
4. 친절·공정의무 위반				
가. 불친절에 의한 물의 야기	감봉	견책	불이익처분	
나. 불공정에 의한 물의 야기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불이익처분
5. 비밀엄수의무 위반				
가. 직무 관련 비밀의 누설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행동강령신고 내용 누설	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다.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6. 청렴의무 위반				
가. 금품·향응 수수 또는 요구	별표 1의3과 같음			
나. 금품·향응 수수 관련 관리감독 소홀	강등~감봉		견책~불이익처분	
7.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 관련 비위	별표 1의4와 같음			
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다. 음주·무면허운전	별표 1의5와 같음			
라. 마약류 관련 비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마. 스토킹범죄	파면	파면~해임	강등~감봉	감봉
바. 혐오표현을 한 경우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사.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집단행위포함) 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0. 행동강령의 위반				
가.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강등~정직	감봉	견책	불이익처분
나. 특혜의 배제 위반	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강등~정직	감봉	견책	불이익처분
라. 인사청탁 및 인사개입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불이익처분
마.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바. 알선청탁 금지위반	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사.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아.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제한 위반	감봉	견책	불이익처분	
자.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위반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불이익처분

※ 비고

1. 제1호파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2. 제1호더목에서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4조에서 규정한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를 말한다.
   1)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2)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공무원이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3)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은 제1호머목과 같다. 다만, 동법 제14조의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은 제1호더목과 같다.
4. 제7호나목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란 공무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음 어느 하나의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1) 다른 공무원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의 직원
   3)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속 직원 을 말한다)
5. 제7호라목에서 “마약류 관련 비위”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제7호마목에서 "스토킹범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제7호바목에서 “혐오표현”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표현(말, 글, 동작 등)하는 행위를 말한다.

[별표 1의2]

초과근무수당·여비 부정수령 징계양정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유형	부정수령 금액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1.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50만 원 미만	정직~견책	파면~정직
	50만 원 이상	강등~감봉	파면~강등
2. 실적 대리입력 등의 방법으로 제1호의 비위행위에 조력한 경우	50만 원 미만	정직~견책	파면~정직
	50만 원 이상	강등~감봉	파면~강등
3.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100만 원 미만	정직~견책	파면~정직
	100만 원 이상	강등~감봉	파면~강등

※ 비고

1. 부정수령 금액은 해당 비위로 취득한 총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비위행위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하 "조력자"라 한다)의 조력을 받아 제1호의 비위행위를 한 자의 부정 수령 금액 중 조력자의 조력을 원인으로 부정 수령한 금액을 말한다.
2.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는 해당 비위의 동기, 경위, 방법 및 행위 정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위행위로서 매크로 사용, 조력자를 통한 실적 대리입력 또는 퇴근 후 실적입력 등의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거나 수당을 지급받도록 조력한 경우에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생 략)	제4조(징계의 감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징계처분 또는 규칙 제104조 제2항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의 공적에서 제외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 7. (생 략) 〈신 설〉	② ----------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2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 글 또는 동작 등으로 공공연하게 표현(이하 “혐오표현”이라 한다)하는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477호 2026. 10. 21. 결재)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수사기관’이라 한다)”을 “수사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의원면직의 제한) ① 의원면직을 신청한 법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비위사실이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서 법관징계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중임을 통보받은 때 3. (생 략) ② · ③ (생 략)	제2조 (의원면직의 제한) ① ---------- 각 호----------. 1. (현행과 같음) 2. 수사기관----------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478호 2026. 10. 22. 결재)

집행관사무소에 비치할 각종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3 중 3-17, 3-18, 3-19, 3-20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479호 2026. 10. 22. 결재)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전단 중 “법무부장관에게”를 “수사기관에”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하되, 2026년 10월 2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무 위반시 조치) ① ~ ③ (생 략) ④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한대상자가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한 경우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의무 위반시 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수사기관에 ----------.

신법령 목록 (2026. 10. 1. ~ 2026. 10. 15.)

법 률

법률제2205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1336	2026. 10. 8.	4
법률제22056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1338	2026. 10. 13.	5
법률제22057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	〃	9
법률제22058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10
법률제22059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11
법률제22060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12
법률제22061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4
법률제22062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17
법률제22063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	〃	19
법률제22064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23
법률제22065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	〃	〃	24
법률제22066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25
법률제22067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	〃	27
법률제22068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29
법률제22069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	〃	30
법률제22070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32
법률제22071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33
법률제22072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34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674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1332 (별권1)	2026. 10. 1.	2
대통령령제36742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1334	2026. 10. 6.	4
대통령령제36743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
대통령령제3674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
대통령령제36745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
대통령령제3674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
대통령령제36747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1335 (별권1)	2026. 10. 7.	2
대통령령제36704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중 정정	21336 (별권1)	2026. 10. 8.	2
대통령령제36748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1338	2026. 10. 13.	37
대통령령제36749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8
대통령령제36750호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9
대통령령제36751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0
대통령령제36752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1
대통령령제36753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2
대통령령제36754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4
대통령령제36755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8
대통령령제3675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0
대통령령제36757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	〃	51
대통령령제36758호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3

대통령령제36759호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1338	2026. 10. 13.	54
대통령령제36760호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5
대통령령제36761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6

총리령

총리령제2160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332 (별권1)	2026. 10. 1.	3
총리령제2161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일부개정령	〃	〃	4
총리령제2163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
총리령제2164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0
총리령제2162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333	2026. 10. 2.	5

부 령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4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332	2026. 10. 1.	4
법무부령제112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
법무부령제1127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0
법무부령제112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1
법무부령제1130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4
법무부령제1131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	〃	35
행정안전부령제644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332 (별권1)	〃	11
법무부령제 1137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
법무부령제1132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4
법무부령제1133호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5
법무부령제1134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6
법무부령제1135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8
법무부령제1136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0
법무부령제1138호	사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1

법무부령제1139호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21332 (별권1)	2026. 10. 1.	22
법무부령제1140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23
법무부령제1141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5
법무부령제1142호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27
법무부령제1143호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29
법무부령제1144호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30
법무부령제1145호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31
법무부령제1146호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32
법무부령제1147호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34
법무부령제1148호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	〃	〃	35
법무부령제1149호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일부개정령	〃	〃	36
법무부령제1160호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38
법무부령제1150호	검사복무평정규칙 일부개정령	21332 (별권2)	〃	2
법무부령제1151호	검찰근무 규칙 일부개정령	〃	〃	4
법무부령제1158호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6
법무부령제1162호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
법무부령제1163호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11
법무부령제1164호	공소보류자관찰규칙 일부개정령	〃	〃	13
법무부령제116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4
법무부령제1167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5

법무부령제1168호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폐지령	21332 (별권2)	2026. 10. 1.	17
법무부령제1169호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	〃	18
법무부령제1170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	〃	20
법무부령제1159호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	21332 (별권3)	〃	2
법무부령제1152호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1332 (별권4)	〃	2
법무부령제1153호	검찰보고사무규칙 일부개정령	〃	〃	5
법무부령제1154호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일부개정령	〃	〃	7
법무부령제1155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	〃	〃	12
법무부령제1156호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	〃	〃	16
법무부령제1157호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	〃	〃	20
법무부령제1165호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일부개정령	〃	〃	27
법무부령제1171호	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	〃	〃	29
고용노동부령제484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333	2026. 10. 2.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75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	〃	〃	8
국방부령제1225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	〃	〃	9
국방부령제1226호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일부개정령	〃	〃	13
국방부령제1227호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일부개정령	〃	〃	15
국방부령제1228호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	〃	〃	16
국방부령제1229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	〃	17

국방부령제1230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333	2026. 10. 2.	18
국방부령제1231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0
국토교통부령제2026-116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1
농림축산식품부령제795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	〃	25
법무부령제1129호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	〃	〃	26
보건복지부령제1203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	〃	27
성평등가족부령제17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성평등가족부령	〃	〃	28
해양수산부령제828호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	〃	〃	30
해양수산부령제830호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일부개정령	〃	〃	79
행정안전부령제647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	〃	〃	82
법무부령제1161호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333 (별권1)	〃	2
행정안전부령제648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	〃	15
행정안전부령제649호	경찰수사규칙 개정령	〃	〃	17
행정안전부령제650호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제정령	〃	〃	61
행정안전부령제651호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정령	21333 (별권2)	〃	2
국토교통부령제1631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1334	2026. 10. 6.	1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1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21334	2026. 10. 6.	12
해양수산부령제829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7
재정경제부령제52호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335	2026. 10. 7.	4
법무부령제1156호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21335 (별권1)	〃	3
행정안전부령제648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중 정정	〃	〃	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1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21336	2026. 10. 8.	5
행정안전부령제642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	〃	47
행정안전부령제646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3
법무부령제1155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21336 (별권1)	〃	3
법무부령제1159호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 (1) 중 정정	〃	〃	4
행정안전부령제652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
국토교통부령제1631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21337	2026. 10. 12.	4
보건복지부령제1204호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
산업통상부령제22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4
법무부령제1162호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21337 (별권1)	〃	2
국토교통부령제1632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338	2026. 10. 13.	57
성평등가족부령제17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성평등가족부령 중 정정	〃	〃	67

법무부령제1130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21338(별권1)	2026. 10. 13.	2
법무부령제1131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	〃	3
고용노동부령제485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339	2026. 10. 14.	4
고용노동부령제486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
재정경제부령제54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	7
해양수산부령제831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9
행정안전부령제649호	경찰수사규칙 개정령 중 정정	〃	〃	11
국방부령제1232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340	2026. 10. 15.	4
문화체육관광부령제649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0



2026. 11. 1. **제1747호**
Supreme Court of Korea



ISSN 2951-2255